

#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-145호

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, 신청서 제출 절차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12월 8일

해양경찰청장

## 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

### 1. 사업 목적

- 「유·도선 사업법」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,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·도선(이하 '노후 유·도선')의 대체 건조 등 유·도선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함

### 2. 지원 내용

- 유·도선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(총 사업비의 80% 이내)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.5%를 최대 15년간(거치 5년+상환 10년) 지원  
※ 총 사업비는 「법인세법」제4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, 국가·지자체 등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을 제외

### 3. 유·도선 이차보전사업 선정 주요 내용

- (신청자격) 「유·도선 사업법」제3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받은 유·도선 중
  - (①) 노후 유·도선을 대체하여 유·도선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 건조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선박
  - (②) 「유·도선 사업법」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,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대상이 된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 중고선박(이 경우 '26.12.31.까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)
- (선정기준) '행정안전부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'('25.2.27.)(이하 '시행지침') 상 심사기준【별지 제3호서식】

- (선정절차) ①유·도선 안전협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→ ②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→ ③당해연도 해양경찰청의 해수면 유·도선 이차보전사업의 신규사업 예산 고려 선정·통보
  - ※ 해경청 선정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, 지원대상자가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해경청의 이차보전금 지급이 개시되며 기한 내 대출 미실행 시 선정 취소
- (접수기간) '25.12. 8.(월) ~ 12.29.(월)
- (신청방법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([www.kcg.go.kr](http://www.kcg.go.kr)) 새소식/알림 →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,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
  - ☞ (접수처) (사)유·도선 안전협회
    - 주소 : (우 3012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(SR파크원 801호)
    - 전화 : 044) 865-8613
  - ※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, 전자우편(e-mail)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  - ☞ (협약은행)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부산은행
- (선정규모) '26년도 해수면 유·도선 이차보전사업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

## 4. 제출서류

- 필수제출 10종
  - ① (서식1)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
  - ② (서식2) 유·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(※ 사업계획 충실성 평가 자료)
  - ③ (서식3)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(전, 후, 좌, 우) 1부
    - ※ 신청자격(②)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가능
  - ④ (서식4) 대체 건조 후 유·도선 사업 투입 확약서 1부
  - ⑤ (서식5)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·해체 확약서 1부
  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- ⑦ 유·도선 사업 면허증(신고확인증) 사본 1부(사업영위기간 등 평가 자료)
  - ⑧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
  - ⑨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
  - ⑩ 조선소 건조계약서 또는 계약약정서(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)

- 선택제출 7종
  - ①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
  - ② 협약은행 대출 의향서(사업계획 충실성 평가 자료)
    - ※ 명칭·양식은 협약은행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, 협약은행의 대출 의향 표기 필요
  - ③ 협약은행 건조자금 대출 금융거래확인서(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)
  - ④ 협약은행의 '대출거래약정서'(융자실행자 가산점 증빙 자료)
  - ⑤ 과세기간 1년치(24.1.1~12.31.) 영세사업자 증빙서류(영세사업자 가산점 증빙 자료)

☞ (영세사업자) 자본금 1억원 이하, 매출액 8천만원 이하

- (개인·법인 사업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매출액 8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용)
  - 발급처 : 정부24, 홈텍스, 행정복지센터, 구청, 무인민원발급기, 세무서 등
- (법인 사업자) 법인 등기사항정부증명서(자본금 1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)
  - 발급처 : 법원 등기소(인터넷 등기소), 무인민원발급기 등

- ⑥ 「친환경선박법」에서 규정한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 · 예비인증서(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가산점 증빙 자료)
- ⑦ 선박건조 공정계획표 또는 공정률 확인서(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)
  - ※ 선박이 건조 중인 조선소의 직인·날인 필수

## 6. 기타사항

- 선정 결과 발표 이후,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
-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- 서류상의 기재 착오, 필수·선택 서류 미제출, 보완요구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됨
- '시행지침'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 지침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지원받은 이차보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
- 기타 부주의 '시행지침'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등에게 책임이 있음

## **7. 문의처**

- 정책설명 :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(☎032-835-2249)
- 접수·신청문의 : 유·도선 안전협회(☎044-865-8613)

■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[별지 제1호서식]

##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	
신청인	상호(명칭)	성명(대표자)			
	생년월일	전화번호			
	주소				
	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				
해체 및 매각대상 선박의 명세	선명 및 업종	총 톤수	선질	승선 정원 승객 명, 선원 명	
	적재 중량(용량)	진수 연월일	선령(공고일 기준)	기타사항	
건조 계획 선박의 명세	선명 및 업종	총 톤수	선질	승선 정원 승객 명, 선원 명	
	친환경기술 적용 유무: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별지와 같음				
건조자금 조달계획	총 사업비	만원	대출신청 금액 (총사업비의 80% 이내)	만원	
	건조자금	연도별 자금조달 계획			
		20년 월	20년 월	20년 월	자기자금 조달방법
		만원	만원	만원	
		만원	만원	만원	
		만원	만원	만원	

「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」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·도선안전협회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처리 절차				
	신청서 작성 제출	접수	심사 (평가)	사업후보자 추천	사업자 및 대출 가용액 결정
업체	유·도선 안전협회	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심사위원회	유·도선 안전협회	금융기관	금융기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## 유·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

### 1. 사업의 개요

### 2. 자산 및 부채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자 산			부 채		
항 목	금 액	비 고	항 목	금 액	비 고

### 3. 기존 사업 현황

사업 종류 (유선/도선)	선 박 명	영업 구역	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	
			승객(명)	운항 횟수

※ 건조 척수별(선박별)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

### 4. 자금 조달 계획

(단위: G/T, 척, 만원)

선명(업종)	건조 톤수	건조 척수 (①)	건조 가격 (②)	총 투자액 (①×②)	자기 자금	융자 신청 금액
계						

※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(건조금액)의 80% 이내, 건조 척수별(선박별) 작성

- 자기 자금 조달방안

## 5. 건조 선박의 제원

- 주요 제원
  - 선질, 장, 폭, 심, G/T(총톤수), DWT(중량톤), 탑승 인원(승객정원) 등
-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
  - ※ 건조 척수별(선박별) 작성

## 6. 선박 건조 공정계획(예상)

선박 건조 공정	일정
○ 계약체결 (10%)	
○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(20%)	
○ 강재조립 개시 (40%)	
○ 강재조립 25% 조립 완료 (50%)	
○ 강재조립 50% 조립 완료 (60%)	
○ 강재조립 75% 조립 완료 (70%)	
○ 진수 (80%)	
○ 인도 (100%)	

※ 일정은 년, 월 기재

## 7.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

- 담보물의 종류
- 담보가액 : 원

○ 담보 내역(해당하는 경우 기재)

구분	담보 재산명	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	담보재산의 규모( $m^2$ )	담보재산의 예상 가액	기 담보설정액
1					
2					
3					

※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(내역)만 기재

8. 영업 계획

(단위: 명, 톤)

사업 종류 (유선/도선)	선명/톤수	영업 구역	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	
			승객(명)	운항 횟수

※ 건조 척수별(선박별) 작성

9. 기대효과

○ 고용증대(고용 창출) 효과

○ 기타사항

(서식 3)

## 노후 선박 보유 현황

1. 선 박 명 :

2. 업 체 명 :

(전면 사진)	(후면 사진)
(좌측 사진)	(우측 사진)

※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.

## 대체 건조 후 유·도선사업 투입 확약서

당사는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(도선)사업 면허(신고확인)를 한 자로서 「2025년도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[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-154호(2025.12. 8.)]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,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「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」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·도선 사업에 투입(선박 건조 후 유·도선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)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,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 . . .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### 유·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

##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·해체 확약서

당사는 「2025년도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[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-145호(2025.12. 8.)]」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‘기존 선박 노후도(30점)’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\_\_\_\_\_호를 제시하며,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(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) 할 것과 「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」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,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 . . . .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## 유·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

(참고용)

■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[별지 제3호서식]

## 유·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심사기준

심사항목		배점	세부 지표 및 심사등급				평점								
기업 건실도 (25)	■ 기업 신용 평가 등급	25점	●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(증빙서류 첨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신용평가구간 1~2</td><td>신용평가구간 3~4</td><td>신용평가구간 5~6</td><td>신용평가구간 7이하</td></tr> <tr> <td>25</td><td>20</td><td>15</td><td>10</td></tr> </table>				신용평가구간 1~2	신용평가구간 3~4	신용평가구간 5~6	신용평가구간 7이하	25	20	15	10	
신용평가구간 1~2	신용평가구간 3~4	신용평가구간 5~6	신용평가구간 7이하												
25	20	15	10												
유·도선사업 기여도 (25)	■ 사업영위 기간	5점	10년 이상 5	10년 미만 ~7년 이상 4	7년 미만 ~4년 이상 3	4년 미만 2									
	■ 신규건조 추진도	10점	● 신청 선박 신규건조 추진 현황(증빙서류 첨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건조 중(50%이상) ~ 건조완료</td><td>건조 중(50%미만)</td><td>계약체결</td><td>계획 중</td></tr> <tr> <td>10</td><td>7</td><td>4</td><td>1</td></tr> </table>				건조 중(50%이상) ~ 건조완료	건조 중(50%미만)	계약체결	계획 중	10	7	4	1	
건조 중(50%이상) ~ 건조완료	건조 중(50%미만)	계약체결	계획 중												
10	7	4	1												
■ 보유 선박	5점	● 내수면 선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20톤 이상 5</td><td>20톤 미만~3톤 이상 3</td><td>5톤 미만 1</td><td></td></tr> </table>				20톤 이상 5	20톤 미만~3톤 이상 3	5톤 미만 1							
20톤 이상 5	20톤 미만~3톤 이상 3	5톤 미만 1													
● 해수면 선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100톤 이상 5</td><td>100톤 미만~70톤 이상 4</td><td>70톤 미만~50톤 이상 3</td><td>50톤 미만~30톤 이상 2</td><td>30톤 미만 1</td></tr> </table>				100톤 이상 5	100톤 미만~70톤 이상 4	70톤 미만~50톤 이상 3	50톤 미만~30톤 이상 2	30톤 미만 1							
100톤 이상 5	100톤 미만~70톤 이상 4	70톤 미만~50톤 이상 3	50톤 미만~30톤 이상 2	30톤 미만 1											
■ 연관산업 기여도	5점	● 최근 10년간 건조 실적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3척 이상 5</td><td>2척 4</td><td>1척 3</td><td>0척 2</td><td></td></tr> </table>				3척 이상 5	2척 4	1척 3	0척 2						
3척 이상 5	2척 4	1척 3	0척 2												
유·도선 노후도 (30)	■ 기존 선박 노후도	30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FRP선 목선</td><td>25년 이상 30</td><td>25년 미만~20년 이상 20</td><td>20년 미만~15년 이상 10</td><td>15년 미만 5</td></tr> </table>				FRP선 목선	25년 이상 30	25년 미만~20년 이상 20	20년 미만~15년 이상 10	15년 미만 5				
FRP선 목선	25년 이상 30	25년 미만~20년 이상 20	20년 미만~15년 이상 10	15년 미만 5											
성장 잠재력(20)	■ 사업계획 충실향	20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탁월 20</td><td>우수 18</td><td>보통 16</td><td>미흡 14</td></tr> </table>				탁월 20	우수 18	보통 16	미흡 14					
탁월 20	우수 18	보통 16	미흡 14												
가·감점	■ 가·감점 (심사위원회 평가)	최대 25점	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용자실행자(5점)</li> <li>● 도선 대체 건조(3점)</li> <li>● 영세사업자(5점), 자본금 1억원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, 증빙서류 첨부</li> <li>● 안전 관리 우수업체(3점),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</li> <li>●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(5점, 증빙서류 첨부)            ※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선박으로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인증서(예비인증증서포함)를 발급받은 선박         </li> <li>● 유·도선 안전협회 가입(2점)</li> <li>● 유·도선 정보시스템 참여도(2점)</li> </ul>											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조선소 미계약(5점)</li> <li>● 금융기관 용자 미실행(3점)            ※ 대출포기 의사를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면으로 제출할 경우 감점대상 제외         </li> <li>● 벌칙처분(2점), 행정처분(1점), 과태료부과(1점)</li> </ul>											
총 점		125점													

※ 총점이 같을 경우 유도선 노후도, 유도선사업 기여도, 기업 건실도, 성장 잠재력, 가점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

※ 신규업체(면허취득일 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 업체)는 유·도선 사업 기여도를 기업 건실도로 대체

※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탈락

※ 기업 신용 평가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은 심사항목 배점의 최저점수를 반영

평가 일자 : . . . .

평가위원 :

(서명)